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1049 토지 (2025-07702-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G250812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남감정평가사사무소

TEL : 055-266-7771, Fax : 055-266-7773

(토지)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유 위 중

감정평가액	일천구백일십육만이천원정 (₩19,162,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선동 (2025-07702-A0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8.25	2025.08.21 ~ 2025.08.25	2025.08.2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474	토지	1,474	13,000	19,162,000
		이	하	여	백	
	합 계					₩19,16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1049	전	보전관리지역	1,474	1,474	13,000	19,162,000	
합 계								₩19,162,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대상물건의 개요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주변상황	2025년 개별지가 (원/㎡)
1	남지읍 시남리 1049	전	1,474	휴경지	보전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마을주변 임야지대	13,700

2. 기타 사항

없음.

I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상기 토지에 대한 구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의 관계법규와 일반 감정평가이론을 근거로 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08.25.로 하였음.

4. 실지조사일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일은 2025.08.21.임.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기타 사항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의 종류

- ① 공시지가기준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② 거래사례비교법~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③ 원가법~대상물건의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고려한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④ 수익환원법~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등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2.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출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1). 비교표준지의 선정

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표준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적용 본건기호
A	시남리 424-1	전	199	전	보전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14,500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② 선정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위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2). 시점수정(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기 간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5.01.01.~2025.08.25. (창녕군 보전관리지역)	0.315 (1.00315)	2025.01.01.~2025.06.30.: 0.240% 2025.06.01.~2025.06.30.: 0.040% $(1+0.00240) \times (1+0.00040 \times 56/30)$ $\div 1.00315$

※2025년 07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미발표로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이하 동일함).

3).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비교치:1.000)

4). 개별요인 비교

① 개별요인 비교항목

비교조건	항목 또는 상세항목
접근조건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교통의 편부
자연조건	일조, 통풍,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수해 · 기타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경작의 편부
행정적조건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	----------

②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본건 토지/비교표준지)

본건 기호	비교 표준지 기호	개 별 요 인							비 고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1	A	-	0.75	0.95	0.65	1.00	1.00	0.463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자연조건(일조 등),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 05. 14. 선고), 2002두5054(2003. 07. 25. 선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 12. 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선례 등을 기초로 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음.

② 산식

(사례자료 기준 표준지의 가격) 사례가격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점수정 후 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③ 인근의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기 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거래단가 평가단가 (원/㎡)	평가목적	거래시점 기준시점
A	시남리 ***	전	1,177	보전관리	21,240	(거래사례)	2025.06.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시남리 ***	전	1,328	보전관리	26,000	시가참고	2024.07.25.
나	시남리 ***	전	780	보전관리	22,000	담보	2021.06.18.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거래사례의 거래단가 = 거래가액/면적

④ 사례자료의 선정

상기 사례자료 중 비교표준지 및 대상토지와 물적 유사성이 있는 사례자료인 평가선례 기호(가)를 적용 사례자료로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였음.

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

※비교표준지A <평가선례(가)와 비교>

구분	기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산출치
사례자료 기준 표준지의 가격	26,000	- (주1)	1.00446 (주2)	1.000 (주3)	1.050 (주4)	27,422	약1.885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점수정 후 가격	14,500	-	1.00315	-	-	14,546	
(주1)사정보정	-						
(주2)시점수정	창녕군 보전관리지역 2024.07.25.~2025.08.25. : 1.00446						
(주3)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주4)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	1.00	1.00	1.05	1.00	1.00	1.050
	비교표준지는 사례자료와 비교 시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⑥ 탐문조사 지가수준

본건 인근 토지의 시세	본건 인근의 유사한 토지는 @12,000~15,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

⑦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산출치와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현지조사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1.89

⑧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대한 검증

후술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참조.

6).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산출단가(원/㎡)							
본건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단가 (원/㎡)
1	14,500	1.00315	1.000	0.463	1.89	12,728	13,000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① 인근의 거래(매매)사례

기 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거래가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적용 본건 기호
A	시남리 ***	전	1,177	보전관리	25,000,000	21,240	2025.06.23.	1

※거래단가 = 거래가액/면적

(자료출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②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선정이유

인근지역 내에 위치한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고 인근의 지가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사례라고 판단되는 상기 “거래사례 기호(A)”를 본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 하였음.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하지 않았음.(1.00)

3). 시점수정(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5.06.23.~2025.08.25.	0.063 (1.00063배)	창녕군 보전관리지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비교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비교치:1.000)

5). 개별요인 비교

① 개별요인 비교항목

비교조건	항목 또는 상세항목
접근조건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교통의 편부
자연조건	일조, 통풍,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수해 · 기타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경작의 편부
행정적조건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②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본건 토지/비교 거래사례)

본건 기호	비교 거래사례 기호	개 별 요 인							비 고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1	A	-	0.80	0.95	0.80	1.00	1.00	0.608	본건은 비교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자연조건(일조 등),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비교사례단가(원/㎡)×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산출단가(원/㎡)								
기호	사례 기호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보 정	시점수정	지역요 인	개별요 인	산출단가 (원/㎡)	산정단가 (원/㎡)
1	A	21,240	1.00	1.00063	1.000	0.608	12,922	13,000

3. 토지 감정평가액(단가)의 결정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

기호	산정단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1	13,000	13,000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토지 감정평가액(단가)의 결정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검토한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시산가액(단가)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단가)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을 감정평가액(단가)으로 결정하였음.

토지 기호	결정단가(원/㎡)
1	1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의 제 규정과 일반 감정평가이론에 비추어 볼 때 본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이 적정하므로 앞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단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이용상황 |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 |
| 6. 제시목록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임대상황 및 기타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소재 '시남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의 휴경지 및 임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으로 북동향의 완경사지이며, 장기간 휴경으로 자연생 수목이 무성한 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 제시목록외의 물건

지상에 자연생 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임대상황 및 기타

가)임대상황 :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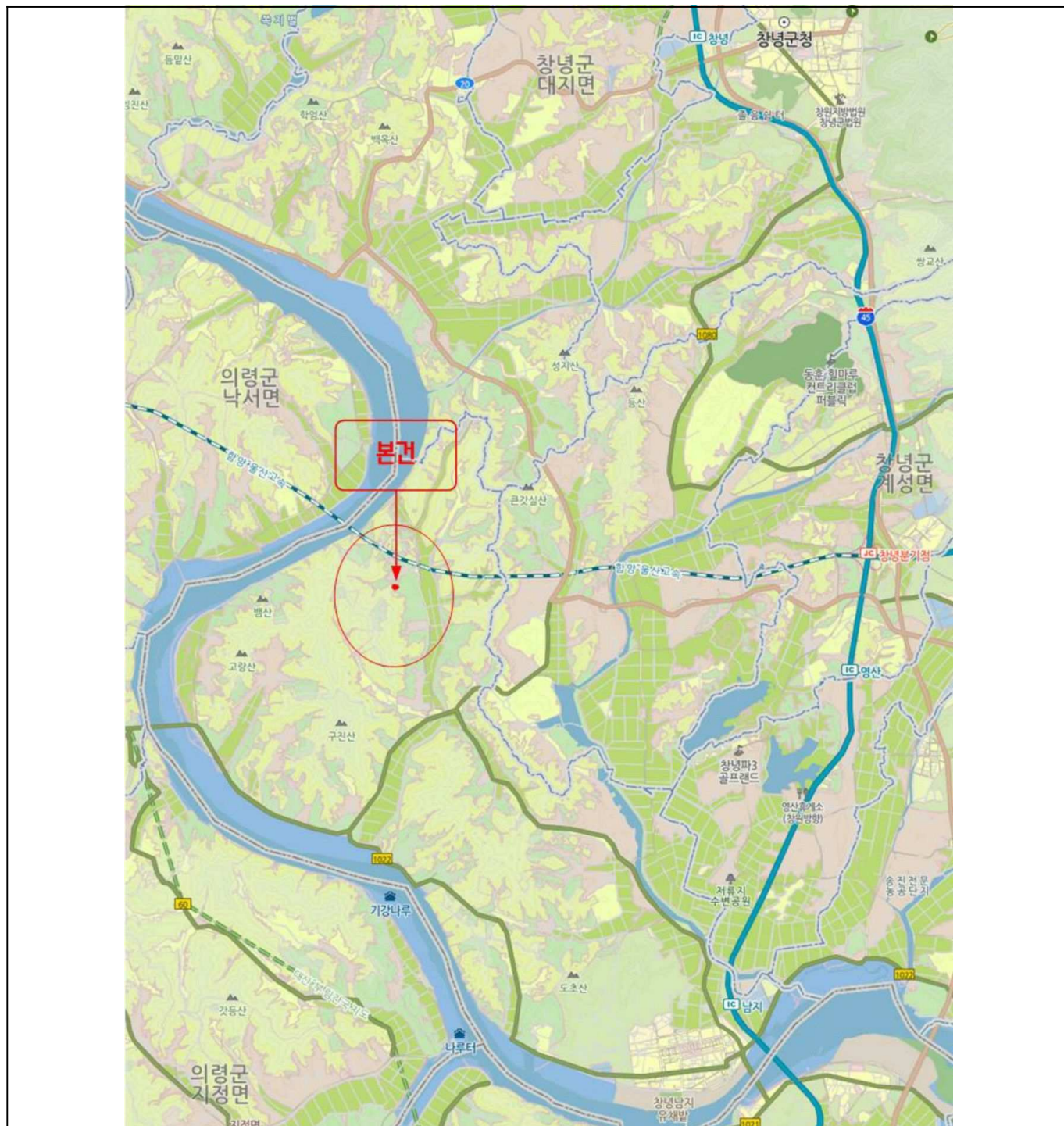
나)기타 : 없음.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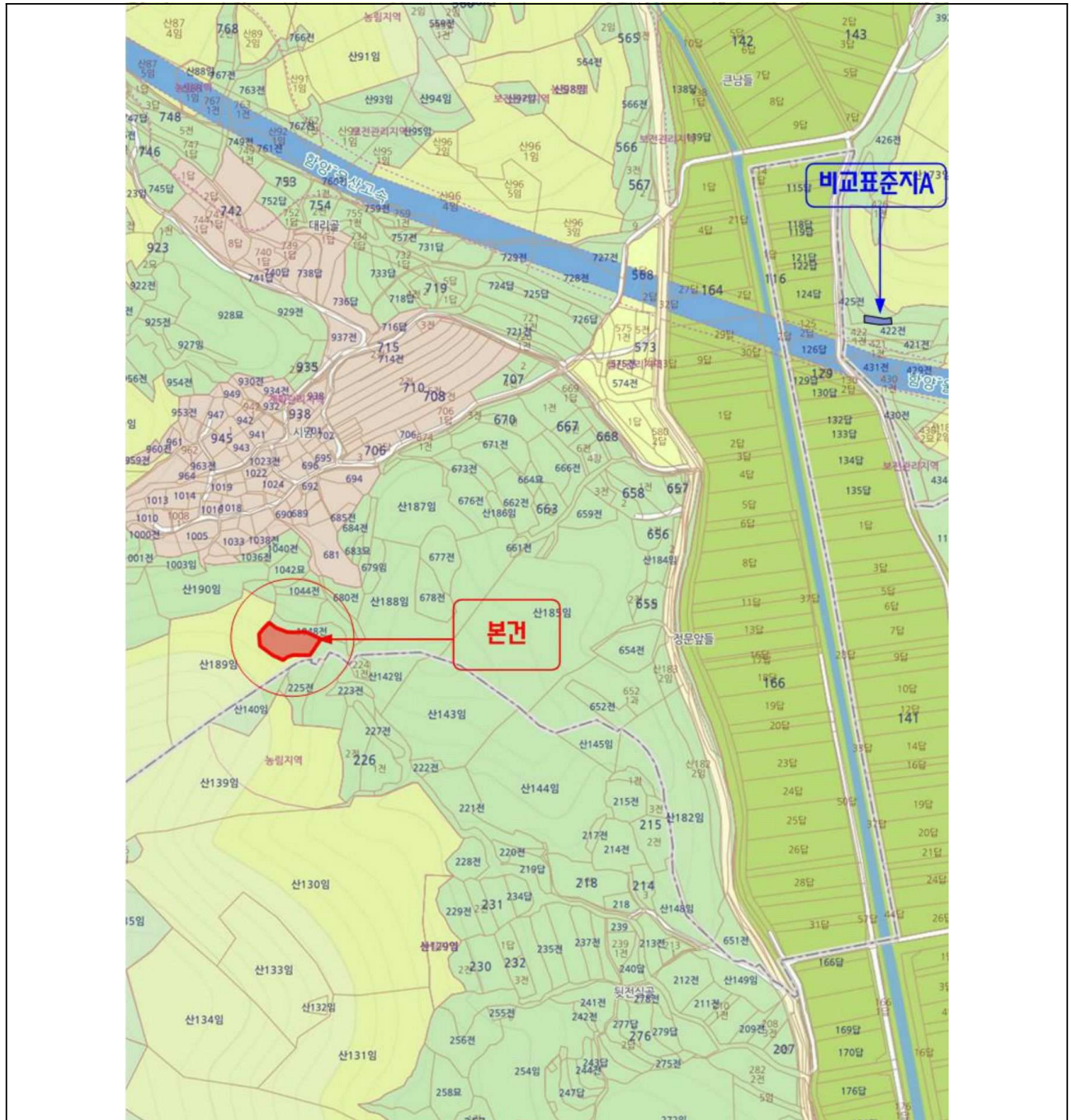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1049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1049





회보서

우)5149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737 102동 1901호(사파동,
동성아파트)
E-Mail : wj6677@KAPALAND.CO.KR

TEL. 055-266-7771~2
FAX. 055-266-7773

문서번호 : G25081205

시행일자 : 2025-08-25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참 조 : 김연경

제 목 : 감 정 의 회 에 대 한 회 보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저희 경남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08.12자 귀 제 『2025-07702-A01』 호로 의뢰하신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1049 토지 (2025-07702-A01)』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경남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55-266-7771~2, FAX: 055-266-7773)

문서번호 : G25081205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5.08.12 자 귀 제 『 2025-07702-A01 』 호로

의뢰하신 『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1049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00,000	기본수수료 ≒200,000
실	여 비	94,2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3,000	
	공부발급비	2,090	
	기타 실비	2,000	
비	소 계	101,29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301,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30,100	
합 계		331,1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331,100	

불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새마을금고

9003-2547-6824-3 경남감정유위종

경남감정 사업자등록번호 : 609-03-80480

경남감정평가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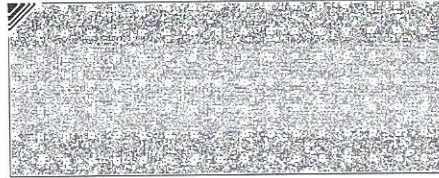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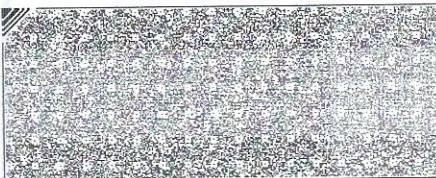


발급번호 : 202548740005410998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08/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유위종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46, 에이스빌딩 803호		
			전화번호	010-2944-2204		
신청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1049	전	1,474.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관리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영농여건불리농지 [이하공란]				
확인도면						범례
						- 보전산지 - 입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법정동
						축척 1/14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 08/ 12 경 상 남 도 창 녕 군 수						수입증지 붙이는곳
						수 수 료 전 자 결 제 민 원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874025330-11049-0000		
토지소재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지번	1049	축척	1:1200
토지 표시			

도면번호	28	발급번호	202548740-00541-0999
장 번호	1-1	처리시각	22시 15분 44초
비 고		발급 자	인터넷민원

지 목		토 지 표 시		사 유		주 소	
면 적(m ²)						성명 또는 명칭	
변 동 일 자						등록 번호	
변 동 원 인							
(01)	*1,47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41(봉곡동)			
전				(03) 소유권이전		630310-1*****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록수정 년월일	1984년 07월 01일 수정	1990년 01월 01일 수정	1992년 01월 01일 수정	1993년 01월 01일 수정	1994년 01월 01일 수정	1995년 01월 01일 수정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63	85	86	90	93	96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2024년 01월 01일	2025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m ²)	9,180	11,000	12,300	14,700	13,400	13,400	13,700
							용도지역 등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5년 8월 12일

구경차남경

[illegible]



문서확인번호 : 1755-0045-8949-7244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548740005411000	처리시각	22시 15분 45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지번	1049번지	축척	등록:1/1200 출력: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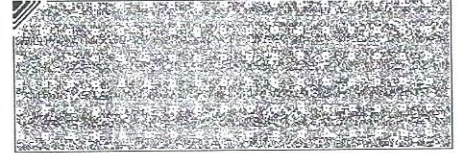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08월 12일

경 상 남 도 창 녕 군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1951-1996-408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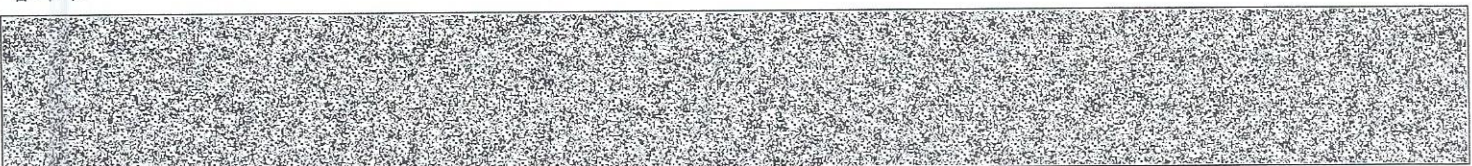


[토지]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1049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2)	1999년9월20일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시남리 1049	전	1474㎡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7월 20일 전산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2)	소유권이전	1993년12월23일 제30270호	1980년6월7일 매매	소유자 이필규 391207-***** 창녕군 영산면 서리 51 법률제4502호에의함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7월 20일 전산이기
2	압류	2007년6월13일 제12499호	2007년6월13일 압류(재무과-613)	권리자 창녕군
3	2번압류등기말소	2010년8월17일 제14562호	2010년8월17일 압류해제	
4	소유권이전	2021년5월12일 제7707호	1994년6월20일 증여	소유자 이선동 63031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41(봉곡동) 법률 제16913호에 의하여 등기
5	압류	2022년5월23일 제8005호	2022년5월13일 압류(민원봉사 과-16843)	권리자 창녕군 3834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95202CMR01195083010964252000008620600014452001112

발급확인번호 AA0J-TIBU-6449

발행일 2025/08/25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압류	2025년2월10일 제208438호	2025년2월10일 압류(징세과-티 3499)	권리자 국 처분청 부산강서세무서장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창원지방법원 창원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5년 8월 25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